

KIEP

오늘의 世界經濟

World Economy Update

제 05 - 11호 / 2005년 4월 21일 발간

쌀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 검증완료에 따른 향후 쟁점

작성자: 박지현 무역투자정책실 전문연구원
【jhpark@kiep.go.kr, ☎ 3460-1136】

主要內容

- 2004년 12월 WTO 사무국에 통보된 우리나라 수입쌀에 대한 관세화유예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수정안이 WTO 회원국의 검증절차를 거쳐 지난 4월 12일 최종 확정되었음.
 - 최종 확정된 이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2005~2014년까지 관세화유예 10년 연장, 소비자시판물량은 2005년도에 수입량의 10%에서 2010년 이후 30%로 증량 등 쌀 협상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 검증기간 중 우리나라는 협상결과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국가별 후속협의를 마무리하였음.
 - 특히 양자차원의 부가적인 합의사항과 관련해서 중국과 수입위험평가 등 동식물검역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국회비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WTO 검증완료에 따라 오는 9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수입쌀 소비자판매, 중국·캐나다 등과의 부가적 합의사항, 국회비준, 유예도중 관세화 전환여부 등이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 WTO 검증절차 종료

- 한국은 1년여 동안 진행해 온 쌀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쌀 관세화유예 연장을 결정하였고, 2004년 12월 30일 관세화유예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 (Country Schedule) 수정안을 WTO 사무국에 통보하였음.
- 이행계획서 수정안은 회원국들의 이의제기 없이¹⁾ 3개월간 WTO 회원국의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WTO 사무총장은 지난 4월 12일 인증문서(certificate)를 발급하였음.
- 한국은 2004년 1월 20일 WTO에 쌀 협상 개시를 통보하였고 미국, 중국,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9개국이 협상에 참여하였음.
- 2004년 5월 6일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양자협상이 개시되었으며, 6월 초에 협상참여 9개국과 1차 협상을 마쳤고, 12월 중순 미국과 9차 협상, 중국과 8차, 태국과 6차, 캐나다 등 5개국과 3차, 호주의와 2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이 종료되었음.

2. 최종 확정된 이행계획서 주요 내용

가. 쌀에 대한 특별대우(Review of Special Treatment for Rice)

- 쌀에 대한 특별대우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연장하며 이행 5년차인 2009년도에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행상황에 대한 다자간 검토를 실시하도록 함.
- 최소시장접근물량(MMA)²⁾은 2005년 225,575톤(1988~90년 국내소비량의

1) 협상과정에서 캐나다, 인도 등 국별 쿼터를 배분받지 못한 협상국들 또는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국들의 이의제기(일본과 대만의 쌀에 대한 관세화 협상의 경우 일부 WTO 회원국들이 관세화 조건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가 예상되었으나 검증기간 중 이의가 제기된 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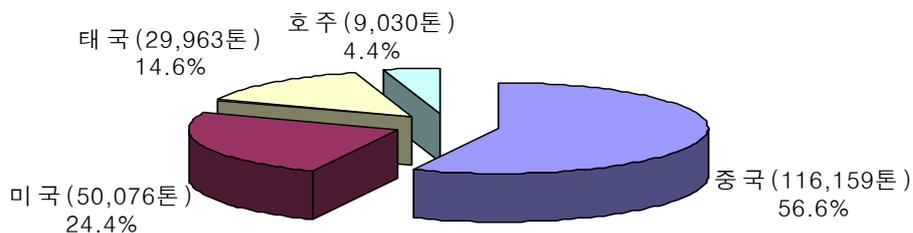
4.40%)에서 2014년 408,700톤(7.96%)까지 매년 균등하게 증량하도록 함.

나. 최소시장접근물량 할당(Allocation of the MMA)

□ 현행 최소시장접근물량 205,228톤은 2001~03년 수입실적을 반영하여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국별 쿼터를 배정함.

- 신규물량은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특수용도 쌀에 대한 국내수요가 있을 경우 일부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

<그림 1> 현행 최소시장접근물량의 국별 쿼터 배분비율



다. 이행기간 중 특별대우 중단(Cessation of Special Treatment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 이행기간 중 언제든지 특별대우의 적용을 중단(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으

2) 최소시장접근(MMA)은 농산물협정상의 시장접근방식의 하나이다.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화품목의 경우 국내외가격차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수출국들의 시장접근기회가 없게 된 점을 감안, 최소한의 시장접근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3% 미만일 경우 UR 이행기간 내에 저율관세의 시장접근기회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초기년도 3%에서 최종년도 5%까지 증량하도록 합의되어 이행계획서(C/S)에 반영되었다. 최소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C/S에 제시된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며, 관세화 전환시 관세율은 농업협정문과 DDA협상의 일반원칙이 적용
됨.

- 또한 최소시장접근물량은 관세화 전환 당시의 물량수준을 유지하되, DDA
협상결과에 따른 최소시장접근물량이 높을 경우에는 DDA 협상결과에 따
른 물량을 적용하도록 함.

라. 수입부과금(Import Mark-up)

□ 한국은 UR 이행계획서에 따라 수입부과금³⁾을 부과할 수 있음.

마. 수입쌀의 이용(Utilization of Imported Rice)

□ 수입쌀이 밥쌀용 및 이외 용도로 국내 유통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함.

- 수입방식은 현행과 같이 전량 국영무역을 유지하도록 함. 소비자시판 물량
은 2005년도에 수입물량 중 10%가 시중 판매되고, 6년차인 2010년에는
30%까지 늘리되 2014년까지 30% 비율을 유지하도록 함.
- 고품질 쌀을 포함하여 밥쌀용 쌀은 통상적인 유통경로, 도매상, 유통업자,
최종수요자에게 접근이 허용됨. 밥쌀용 쌀은 저장기간으로 인하여 밥쌀용
쌀로서의 품질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기간 내에 유통되도
록 함.

3)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수입, 판매에 소요된 총비용을 공제한 수입이익금으로 국영무역회사의 구
입과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가격마진, 즉 수입차익을 말한다. 수입이익금은 1994년 GATT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내 유통단계가 아닌 수입상품의 통관단계에서 부과된다. Mark-up 운영의 의미는 수입
물품에 Mark-up을 부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므로 시장접근물량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현행수준
에서 유지되어 국내 생산능가를 보호할 수 있고 수입이익금을 정부 관련 기금에 납입하여 생산자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표 1> 이행계획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MMA 증량	2005년에 1988~90년 국내소비량의 4.4%에서 2014년 7.96%로 증량
유예기간	2005~14년까지 10년간 유예
수입방식	전량 국영무역 유지, 소비자 시판물량은 2005년도에 수입량의 10%에서 2010년 이후 30%로 증량
MMA 배분	기존물량은 중국, 미국, 태국, 호주에 배분, 추가물량은 최혜국대우 방식으로 운영

자료: 농림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정리.

3. 국별 후속합의 주요 내용

- 정부는 검증기간동안 협상결과의 이행과 관련된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간의 부가적인 사항에 대한 후속협의를 마무리되었다고 밝힘(구체적인 합의사항은 <표 2> 참고).
-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관련해서 미국, 중국 등 국별 쿼터가 배정된 4개국과는 국별 쿼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개별 국가와는 소비자 시판시 공매절차, 수입규격, 협상결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정부간 연례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양자간 부가적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수입위험평가 등 동식물검역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가 협의를 통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표 2> 국별 후속합의 주요 내용

	기술적·절차적 사항	양자간 부가적 사항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쌀 시판과 관련된 공매기관 지정 - 공매계획 사전 공표 - 정기적인 공매실시, 품질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한내 공매 - 수입쌀 입찰규격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 적용 - 협상결과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정부간 연례 양자협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사항 없음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결과 이행점검을 위한 정부 연례협의 개최 - 장립종 입찰시 입찰규격과 관련하여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벚(Cherry), 사과, 배, 룡간, 여지에 대한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절차를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노력 - 식물검역 정례협의회 출범에 노력, 양국의 검역당국간 회의 개최 추진 - 농수산물 조정관세 품목 축소 또는 관세 인하 등을 위해 양국이 노력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이후 연 1회 상반기 입찰 실시 - 입찰과정에서 취득한 영업관련 정보보호 - 상기 합의는 관세화유에 기간동안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사항 없음
아르헨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자료접수 전제하에 가금육 6개월, 오렌지 4개월 이내 수입위험평가절차 신속하게 진행 - 쇠고기는 위험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접수되면 평가절차 착수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 현행 2%→0%로 인하, 적용물량은 2005년 45만 톤 유지, 2006년 이후 동 수준 유지 노력 - 유채조유(10%→8%), 유채정제유(30%→10%) 인하 - 상기 합의는 관세화유에 기간동안 적용
인도, 이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MA 수입과 별도로 식량원조용으로 이집트산은 1회 2만 톤, 인도산은 관세화유에 기간동안 연간 9,121톤 우선 구매 - 구매시기는 신속성 부여, 국제적 관행에 따른 경쟁입찰 실시
미국, 중국, 태국,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 쿼터는 국제적인 상관행에 따른 경쟁입찰 실시 - 비정상적인 고가입찰시 유찰시킬 수 있는 권리를 한국이 가지며, 3회 유찰시 당해 물량은 최혜국대우물량으로 전환 - 국별 쿼터는 당해연도에 소진되며 이월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사항 없음

자료: 농림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정리.

4. 향후 쟁점 및 전망

가. 수입쌀 소비자판매

□ 쌀 협상결과에 대해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은 소비자시판을 일
정비율 허용한 내용임. 전량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
비자시판 물량은 2005년도에 수입량의 10%에서 2010년 이후 30%로 확대,
유지하도록 하였음.

- 이는 2005년도의 경우 수입쌀의 90%는 가공용 등으로 사용되지만 10%는
밥쌀용으로 슈퍼마켓이나 할인매장에서 판매되어 우리 식탁에 오른다는
것이며, 수입쌀과 국내산 쌀의 경쟁이 시작된다는 의미임.

- 수입쌀은 국별 배분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산 및 미국산 쌀이 주
종을 이룰 전망이다.

□ 쌀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수입
쌀 시판은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는 정부가 쌀 보관이
어려운 장마철(7~8월)을 피해 9월쯤에 수입쌀을 국내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수입쌀 소비자판매에 대한 국내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입
쌀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⁴⁾ 업계간자율거래제도(SBS)⁵⁾로 수입되는 쌀은 주로 주식용으로
소비되고 있으나 이에 상당하는 국내산 쌀을 주식용 이외의 타 용도로 전

4) 일본은 MMA 수입쌀에 대해서는 국영무역을 실시하고 그 일부를 SBS 형태로 민간수입으로 할당
하였다. 수입쌀을 판매할 때에는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공용을 중심으로 공
급하고 나머지는 비축을 하면서 원조용과 사료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5) 일정범위의 국내수요자에게 기본쿼터의 일부분을 배정하여 국내 수요자가 직접 상담, 수입할 수 있
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환하는 등 수입쌀 관리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비교적 국내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⁶⁾는 수입쌀의 원조용이나 사료용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수입쌀이 직접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즉, 국내산 쌀을 사료용·원조용으로 사용하고, 수입쌀로 국내 소비자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나. 양자간 부가적 합의사항

□ WTO에서 최종 확정된 이행계획서 수정안의 내용은 쌀 협상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것은 없음. 그러나 수정안 이외에 중국, 캐나다 등과의 양자차원에서 부가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향후 국회비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과의 부가적인 합의사항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중국과 합의한 내용은 식물검역상 현재 수입위험평가절차가 진행 중인 양벧(체리)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양벧에 대한 위험평가절차가 끝난 후 사과, 배, 룡간(용안), 여지(리치)의 4개 품목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으므로 중국이 제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입위험평가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것임.

- 양벧의 경우 2003년 11월에 수입위험분석이 접수⁷⁾되었으며, 2004년 12월에 시작된 3단계 예비위험평가⁸⁾가 최근 완료된 상태임.

- 사과의 경우 2004년 8월 수입위험분석이 접수되었음. 국내생산이 많은 사과(2003년 전체 과실류 생산에서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와 배(14%)

6) 대만은 WTO 가입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로 수입쌀 관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대만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최소시장접근물량의 35%나 된다.

7) 수출국이 수출하고자 하는 관심품목의 공식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관련 병해충, 생태관련 정보제공.

8) 포괄적인 병해충 목록 작성, 병해충의 카테고리제이션 및 병해충 위험평가가 필요한 병해충 선별.

의 경우 각종 병해충 피해에 대한 검사 소요기간은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통상 소요되는 검역기간⁹⁾ 보다는 수입허용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음. 이 기간 동안 과수 농가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됨.

□ 아르헨티나와의 부가적 합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이미 검역절차 2단계가 진행 중인 가금육은 6개월, 5단계가 진행 중인 오렌지는 4개월 이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평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합의하였음.

- 또한 쇠고기의 경우는 구제역 비발생지역인 남위 42°이남 지역산에 대해 아르헨티나로부터 위험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접수되면 평가절차를 착수¹⁰⁾하기로 하였음.

-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은 2001년 36톤¹¹⁾ 정도가 수입된 이후 구제역 발생으로 더 이상의 수입은 없었음.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문제로 한-미간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수입허용에 대한 검역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것은 민감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음.

- 따라서 상대국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 위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적 방법이 필요함.

□ 캐나다와의 주요 합의사항은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¹²⁾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며, 적용 물량은 2005년도에 45만 톤을 유지하고 2006년 이후에는 동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9) 과학적인 분석이 완료되어야만 수입이 가능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10) 아르헨티나와의 합의서는 2005년 1월 작성되었으나 2005년 4월 현재 3개 품목 모두 아르헨티나측이 위험평가 관련 자료 또는 검토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더 이상의 절차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1) 한국무역통계(냉동쇠고기 HS 0202).

12) 특정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정한 일정수입량까지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저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품에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율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고 하며 이때 부과되는 관세를 할당관세라고 한다.

- 또한 유채조유는 10%에서 8%로, 유채정제유는 30%에서 10%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하였음. 2004년 캐나다로부터의 유채유(HS 1514) 수입은 1,250만 달러¹³⁾로 수입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 유채유 수입의 거의 99%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것임.

□ 인도, 이집트의 경우는 MMA 수입물량과는 별개로 식량원조용으로 이집트산은 1회 2만 톤, 인도산은 관세화 유예기간동안 연간 9,121톤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였음.

- 우선 구매하기로 한 인도, 이집트산 쌀은 총 11만 1,210톤으로 식량원조용이기 때문에 국내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협정문 부속서 5의 Section B 제9항¹⁴⁾에 명시되어 있는 관세화유예로 인한 추가적이고 수용가능한 양허가 현실로 나타난 상황임.

- 쌀을 생산하지 않는 캐나다와 우리나라에 쌀 수출실적이 미미한 국가들과도 부가적인 합의사항을 체결한 것은 모든 협상참여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쌀 협상이 성립되기 때문에 10년 유예연장을 얻어내려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쌀 이외에 여타 품목에 대한 대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임.

- 농민들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검역절차로 인해 중국산 사과와 배가 수입될 경우 과수 농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¹⁵⁾

13) 한국무역통계.

14) 만약 협상의 결과에 따라 특별대우 적용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협상에서 결정한 '추가적이고 수용가능한 양허'를 제공해야 한다(9. If it is agreed as a results of the negoti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8 above that a Member may continue to apply the special treatment, such Member shall confer additional and acceptable concessions as determined in that negotiation).

- 검역절차에 대한 양자간 합의는 절차의 간소화, 생략이 아니고 고의적인 지연을 배제한 정상적인 절차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우리의 검역기준에 맞게 고의성만 배제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¹⁶⁾
- WTO 규정에 따르면 어떠한 국가라도 수입위험평가를 요구하면 이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한국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님. 또한 신속한 절차를 보장한 것이 전면적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님.
- 검역절차의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국가별, 품목별로 상이하고 상대국이 관련 제공자료를 얼마나 신속히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짐. 총 8단계¹⁷⁾의 수입허용절차를 가지는 우리의 안전성 검사의 경우 곧바로 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검역기간 보다는 다소 단축되는 품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관련 품목의 농가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협상결과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며, 농민들의 불안심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과 이해가 필요할 것임.

다. 국회비준과 농민 반발

- 정부는 이번 쌀 협상이 쌀의 관세화유예 연장이라는 주요 내용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행계획서 수정안을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제출, 국회비준을 받을 계획에 있음.

15) 농민들은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연장받는 대가로 중국산 과일의 수입을 개방하기로 이면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입위험평가를 개시한다는 것과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2004년 12월 30일 쌀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이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16)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WTO에 제소당할 우려가 있다.

17) 수입위험분석의 접수 → 수입위험분석의 착수 → 예비위험평가 → 개별병해충 위험평가 → 위험관리방안 작성 → 수입금지제외기준 초안 작성 → 수입금지제외기준 입안 예고 → 수입금지제외기준 고시 및 발효

- 국회비준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WTO에 통보한 뒤, 쌀 수입 입찰공고→가격제안서 접수→입찰→계약 체결→잔류농약 검사→도정·포장→선적→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 국내 도매상에 수입쌀을 판매하게 됨.¹⁸⁾

□ 그러나 농민단체가 이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비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¹⁹⁾

- 농민단체들은 향후 10년간 쌀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날 뿐 아니라 2005년 하반기부터 수입쌀 시판이 허용되면 국내 쌀 산업 붕괴가 우려된다고 국회비준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임. 특히 중국 등 국가별로 별도의 후속합의를 체결한 내용이 알려지자 농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라. 유예기간 중 관세화 전환 여부

□ 쌀 협상 결과 10년간의 관세화 유예가 결정되었지만, 이행기간 중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이 가능함. 따라서 DDA 협상결과에 따라 관세화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음.²⁰⁾

- 즉, DDA 협상결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실익분석을 통해 또 한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임.

□ DDA 협상결과에 따라서 관세화유예보다 관세화가 유리할 수도 있음.

- 관세화를 유예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적용해야 하는

18) 농림부.

19) 전국농민연대는 2004년 말 종료된 협상에서 이미 중국 등과 쌀 이외의 품목을 확대 개방하기로 약속하고 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면서도 그동안 정부는 '이면합의는 없다'고 공언한 점을 비판하면서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성명을 통해 '이번 쌀 협상은 밀실에서 진행한 사실상 이면합의이고 쌀 협상임에도 중국 등에 다른 농산품 관세인하를 약속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20) 향후 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될 쟁점은 유예도중 관세화로의 전환여부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의 관세는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이러한 유예기간 중 보이지 않는 관세 감축은 10년 후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음. 또한 관세화유예가 지속되면서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큼.

- 유예도중 관세화로의 전환여부는 수입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또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임. 유예기간 중이라도 관세화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가까운 기간 내에 관세화로 전환하게 될 경우, 주어진 10년의 구조조정 기간은 더 단축될 수 있음. 따라서 우리에게 유리하고 적절한 시기에 언제든지 관세화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수입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임.

- 그러나 가격만으로 수입쌀과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즉,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값싼 중국산 쌀과의 가격경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품질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향후 쌀 시장 전면개방을 대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